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결근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¹⁾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

1)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일수}$

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의 경우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의 경우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년도 중 신규 임용자,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²⁾

그리고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여야 하므로,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볼 수 있는 경우,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³⁾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에

2)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해서 년도 중 신규 임용자, 휴직자 등에 대해 연가를 가산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해서 병가가 30일 이상일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따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지급 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계산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본부와 ○○서에서는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제외기간 및 보상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연가 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산한 결과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2017년 연가산정 시 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가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결근에 따른 보수 11,147,820원을 회수하고, 연가가산에 오류가 있는 2017년 연가일수 55일을 차감하여 재산정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제외기간)/12개월